

항 소 장

- 사 건 2014가단40724
- 항 소 인 1. 안정희
(피 고) 서울 마포구 희우정로7길 34 가동301호 (04019)
2. 허경숙
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201 푸르지오아파트 303동 904
호 (15463)
3. 김수정
인천 부평구 영성중로 16 주공미래타운5단지 503동 702호 (21321)
4. 오충수
서울 종로구 비봉길 14 현대구기빌라 5동 303호 (03007)
- 피 항 소 인 1. 강태영
(원 고) 제주 제주시 이도1동 1244-10 태흥누리안2차아파트 401 (63196)
(핸드폰: 010-3697-**** 이메일: imadangbal@naver.com)

위 당사자 간의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40724 공유물분할 사건에 관하여 피고(항소인) 들은 동 법원에서 2016. 7. 5. 선고한 아래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므로, 피고들 은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.

<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동 판결 정본을 2016. 7. 14.에 송달받았음>

원판결의 표시

1.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110 임야 13,190㎡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 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2,053/13,190, 피고 강용호에게 539/13,190, 피고 서정

실에게 760/13,190, 피고 고봉주에게 331/13,190, 피고 김애란에게 433/13,190, 피고 안정희에게 661/13,190, 피고 김승실에게 235/13,190, 피고 김명희에게 575/13,190, 피고 임동현에게 149/13,190, 피고 최종인에게 562/13,190, 피고 허경숙에게 661/13,190, 피고 김수정에게 463/13,190, 피고 황용준에게 661/13,190, 피고 김진숙에게 661/13,190, 피고 황종수에게 767/13,190, 피고 오충수에게 833/13,190, 피고 이미령에게 1,362/13,190, 피고 박혜영에게 724/13,190, 피고 임종헌에게 760/13,190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.
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항 소 취 지

1.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 2. 소송비용은 제1,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항 소 이 유

추후 제출하겠습니다.

첨 부 서 류

1. (항소)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

2016.07.27

항소인(피고) 소송대리인
법무법인 수로
담당변호사 김병문

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귀중